

[실무수습기-서울중앙지방법원]

‘생(生) 기록’과 함께 한 2주

차 기 현

- 1977년 1월 生
- 여수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한국경제신문 기자(휴직)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I. 수습일지를 꺼내며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고 한다.) 3년 과정은 더 넓은 ‘기회의 바다’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준 복된 길이다. 물론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공부다. 그래서 항상 ‘日勤天下無難事(나날이 부지런하면 하늘 아래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격언을 마음에 새겨야 했고, 지난 1년 10개월 가량을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지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여름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중앙지법’이라고 한다.)에서의 실무수습 과정을 경험해보니, 실무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오르려면 지금의 노력으론 모자라 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장차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헌신하겠다는 마음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됐다. 마음 한편 품고 있는 정의감에 부끄럽지 않을 만한 실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로스쿨 문을 나서지 않으리라 다짐도 했다. 오늘 하루 몇 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었는가를 묻기 보다, 판례 한 줄 교과서

한 페이지에 얼마나 나의 전(全)인격을 담아 보려고 했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를 각성시킨 중앙지법에서의 실무수습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눌 기회가 생겨서 기쁘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수습일지'를 다시 꺼내 들어 전체 과정을 되새겨보았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진학 가이드'의 일환이므로,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로 하여금 입학 이후의 생활을 어렵듯이나마 그려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 썼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4기 로스쿨 입학 예정자분들이나, 현재 재학중인 3기 원생분들이 장차 실무수습기관을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참고할만한 자료가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II. 法院을 선택하기까지

전남대 로스쿨의 경우 1년차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실무수습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 권장하지는 않는 편이다. 물론 자기 힘으로 수습처를 구해서 다녀오겠다는 원생을 막지는 않는다. 다만 공식적으로 학교 단위로 참가자를 선발해 협약 기관에 과견하는 것은 2년차 여름방학부터다. 나 역시 아직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설픈 실력으로 실무부터 맞본다는 게 썩 내키지 않아서, 1년차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은 실무수습을 계획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학기 개설 예정 과목들을 예습하며 보냈다. 실무수습 나가는 것은 학교 방침대로 2년차 여름방학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2학년 1학기가 되자 다양한 실무수습기관들의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우선 법원, 검찰, 주요 로펌을 마음에 두면서 1기 선배들께 조언을 구했다. 기록을 많이 볼 수 있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 공부를 이어갈 동기 부여가 되는 곳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국회 법제처 헌법재판소 등도 있었지만, 가급적 첫 실무수습은 전통적인 법조 3륜 중 한 곳을 체험하는 게 좋다는 선배들의 의견이 많았다. 여름방학을 돌로 쪼개 7월엔 법원, 8월은 로펌으로 가거나, 7월 검찰, 8월 법원을 선택하는 식으로 여름방학 중 두 군데를 섭렵하려는 동료들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여름방학 중에 법원 한 군데만 집중하기로 했다. 나머지 시간에는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고, 다음 학기 예습에 할애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지방대 로스쿨의 불리함을 딛고 태평양 2명, 울촌 1명, 지평지성 2명 등 대형 로펌 실무수습과정에 선발되는 동기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음과 동시에 조바심도 낫지만, 기왕 한 곳만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최대한 집중해서 열심히 하자는 쪽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III. 법원 실무수습생 선발 과정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강자(强者)는 금력(金力)이 있기에 자유롭다. 또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다수는 스스로 권력을 움직여 룰(rule)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돈 없는 약자(弱者)에게 자유란 종종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다수가 만든 법과 제도는 소수자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약자와 소수자에게는 결국 사법부가 자유와 평등의 마지막 보루다. 법관의 역할은 그래서 고귀한 것이며, 실무수습기관으로 딱 한 곳만 고르라면 역시 ‘法院’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 이유다.

로스쿨 원생의 법원 실무수습은 크게 여름방학 때 진행되는 기본과정(2주,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2일 별도)와 겨울방학에 이루어지는 심화과정(5주~8주, 본인 희망에 따라)으로 나뉜다. 로스쿨 2년차 이상 지원 가능하며, 본인이 원한다면 3년차에도 지원하여 참가할 수 있다. 기본과정은 총 500명을 7월과 8월로 나눠 각각 250명씩 전국의 지방법원과 일부 지원에 나눠 배치한다. 심화과정은 약 100명을 선발하고, 수습법원은 고등법원 단위로까지 확대된다. 로스쿨 기수별 정원이 2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실무수습 기본과정은 전체 인원의 25%, 심화과정은 정원의 5%만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각 학교별로 조금씩 분위기가 다르다고 들었지만, 대체로 실무수습 기관 중에는 법원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안다. 기본과정의 경우 각 로스쿨별 정원에 따라 할당인원이 정해지고, 해당 인원을 각 로스쿨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성적 등)으로 선발한다. 학교에서 법원으로 명단을 보내면 대개는 그대로 확정된다. 전년도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결선 진출팀은 각 학교 할당인원과는 별도로 실무수습 기회가 주어진다. 제2회 대회에서 결선 수상 경험이 있는 나는 학교별 정원 외로 선발된 케이스다. 심화과정의 경우에는 각 로스쿨 원장 추천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법원행정처에서 직접 선발한다.

기본과정 실무수습생 배치는 원칙적으로 각 로스쿨이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산하 지법과 지원으로 한정된다. 예컨대 전남대는 광주고등법원 관할 구역에 있으므로 소속 원생은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과 각 산하 지원들 중 한 곳에 배치된다. 다만 중앙지법만큼은 전국의 모든 로스쿨 원생에게 문호가 열려 있다. 실무수습 지원서를 제출할 때 각자 배치될 수 있는 법원 중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적어내면 희망을 감안하여 수습법원을 지정해준다. 나는 1지망을 중앙지법으로 써 냈는데, 운 좋게도 선발되어 상대적으로 알찬 실무수습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중앙지법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재판부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며, 변호사님들도 가장 치열하게 법리를 다투는 곳으로 알고 있다.

특히 기업 관련 사건의 90% 이상이 이 곳에 집중되어 있다. 막상 가서 보니 법원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서부터 일단 압도되는 느낌이었다.

IV. 중앙지법에서의 생활

1. 잔뜩 긴장했던 하루

7월 7일~8일 양일간의 사법연수원 집체 교육을 마치고,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는 11일 월요일 중앙지법에서의 첫 날을 맞았다. 사법연수원 집체 교육 내용에 관해서는 앞서 법원 실무수습기를 작성한 여러 원생들께서 자세히 소개해주셨기에 반복을 피하기 위해 건너뛰기로 한다. 다만, 앞선 실무수습기에서 수차 언급되었던 것처럼 내게도 법조인의 에티켓 수업이 가장 와닿았다는 점은 기록해두고자 한다. 다소 보수적인 법조계 문화를 간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좋은 기회였다.

실무수습생들은 우선 중앙지법 동관 4층 중회의실에 집결했다. 등록 및 부임신고 절차를 거쳤다. 이 때는 수습생들이 긴 줄을 서서 차례로 법원장께 인사를 올리는 시간도 있었는데, 이런 식의 인사회를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라서 낯설었다. 아침부터 잔뜩 긴장을 해서 그런지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조차 마음먹은만큼 크고 당당하게 나오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 그렇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자신 없게 인사를 한 것이 못내 후회가 된다. 꼭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법원에서의 첫 스타트인데 어설픔게 넘어간 것 같아서다.

법원장 오찬까지 치르고 나니 긴장이 조금 풀렸는지 오래간만에 차려 입은 정장이 조금씩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한 여름에 새까만 정장을, 그것도 안에 긴팔 와이셔츠까지 받쳐 입고 출근하러니 덥기도 하고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지만, 첫 날부터 풀어진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는 생각에 다시 양복 앞섶 단추를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후에는 수습생 각 3명씩 조(組)를 짜서 지도관이 각각 배정됐다. 김훈욱(전남대), 정해진(전북대) 원생과 함께 2주간 동고동락을 했는데, 이분들은 훌륭한 인품도 인품이지만 수습 기간 내내 기록 파악이라든지 법리 구성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여줘서 배울 점이 많았다. 그에 힘입어 법정변론실습에서 형사분야 우수조로 선정되었으며, 실무수습 마지막날 사법연수원에서 시연도 즐겁게 함께 했다. 김, 정 두 원생께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우리 조의 경우, 담임 지도관은 형사 5부 양현주 부장판사께서, 부지도관으로는 민사 30부 이효두 부장판사께서 수고해주셨다. 이 두 재판부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첫 날 일정은 끝이 났다. 민사 지도관 이 부장께서는 첫날 부터 기

록을 세 건(件) 내주셨다. 떨리는 마음으로 실제 사건 기록인 이른바 ‘생(生) 기록’을 받아 들고 보니 ‘드디어 실무의 현장에 왔구나’ 실감이 났다. 판사님들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 분들이 따뜻하게 환영해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평소 ‘절간’이라고만 들었던 법원이 생각보다 분위기가 밝고 좋다는 느낌도 받았다.

2. ‘기록’과의 전쟁

로스쿨에 오기 전 기자 생활을 할 땐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사실(fact)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솔직히 법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사실관계 파악이라면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었다. 1기 선배들은 “법원 실무수습에 가게 되면 엄청난 분량의 기록에서부터 고초가 시작된다”고 잔뜩 겁을 줬다. 하지만 5년간 신문사 밥을 먹으면서, 무언가 ‘날 것인 자료(raw data)’를 간추려 요지를 파악하는 일만은 꽤나 숙달이 되었다고 믿었기에 크게 걱정은 안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그게 아니었다. 사건 기록들은 일단 부피부터가 엄청났다. 과거 신문기사에 써먹기 위해서 읽곤 하던 연구보고서나 정부 발표문, 기업 보도 자료 등을 분량에서 간단히 압도할 정도였다. 우리 조는 다행히 형사5부 배석판사님들의 따뜻한 배려로 판사실 회의 테이블 하나를 차지할 수 있었다. 거기서 안정적으로 기록을 볼 수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못했던 다른 조(組)는 차분히 앉아 기록을 열람할 장소조차 마땅치 않아 그것들을 싸들고 메뚜기처럼 돌아다니느라 읽기도 전에 진을 다 빼는 것 같았다. 더더욱 기록 ‘독해’를 어렵게 했던 것은, 양 당사자가 제각각 제출한 서면이 그 내용면에서 전혀 다른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민사의 경우 더 심했다. 원고의 준비서면을 읽으면서 대충 사건의 열개를 그려보지만, 피고의 서면 첫장을 펴는 순간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영화 ‘라쇼몽’에서처럼, 똑같은 사건을 어쩌면 이렇게 다르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 어안이 병병했던 게 한 두번이 아니다.

들쭉날 답임지도관인신 양 부장께서 형사 항소심 신건기록 네 건과 방청기 작성용 속행기록 한 건을 내어주셨다. 전날 민사 부지도관께서 주신 기록까지 합치면 총 여덟 건의 기록이 수중에 들어왔다. 답임지도관의 재판부가 지방법원 항소부여서 ‘신건’ 기록이라고는 해도 공소장에서부터 검사와 변호인(혹은 피고인) 측의 공방, 그에 이은 1심 판결문까지 형사소송의 한 심급 전체 과정이 전부 담겨 있는 기록이었다. 물론 이와 같은 공판기록과는 별책으로 증거기록 역시 철근으로 공판기록에 연결된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두 권을 합치면 대충 어림 짐작으

로 봐도 한 건당 1000페이지. 결국 약 8000페이지의 기록을 이들 내지 사흘 뒤에 열리는 공판기일 전까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었다. “실무수습생이 무슨 야근을 하세요.”라며 배석판사님들이 놀려댔지만, 정작 판사님들 스스로가 거의 매일 야근이었다. 내어주신 기록을 살살히 파악해서 법정 방청에 들어가리라는 욕심에, 에어콘마저 멈춰버린 법원 청사에 밤늦게까지 남아 있느라 힘들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기록과 씨름하는 법관의 고단한 하루하루를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다보니, 기록을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손가락에 끼는 ‘골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제외하고도, 크게 세 가지를 더 깨닫게 됐다. 첫째,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분분한 주장 가운데 숨어 있는 진실과 정의가 손쉽게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이고, 둘째 사건의 본질은 항상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할 수 있으므로 선불리 예단을 가지고 판단해서 안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로스쿨 생활에서 더 많은 법령과 판례를 학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과 판례인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나중에 학교에 돌아와서 동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중앙지법에서처럼 원인이 기록 읽고 보고서 써낸 경우는 적었던 것 같다. 실무수습기관 중에는 그래도 법원에 나간 이들이 실제 사건 기록을 많이 접한 것 같았지만, 중앙지법에서만만큼은 아니었다. 사건의 다양성 면에서도 타 법원과는 비교가 안됐다. 민사의 경우 대부분의 법원에서 임대차나 대여금 사건이 고작이었고, 예컨대 ‘주가조작 사건’의 기록을 열람해 본 경우는 중앙지법을 빼고는 없는 것 같았다. ‘실무수습’의 취지를 살리기엔 최적의 기관이 바로 중앙지법이 아니었나 생각했다.

3. 법정 방청은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일정상 중앙지법에서 가장 먼저 참관하게 된 곳은 경매법정이었다. 옛 사법연수원 대강당 자리에 마련된 곳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정과는 사뭇 달랐다. 우선 의자마다 보조책상이 달려 있으며, 책상위에는 사설정보업체 등에서 나눠주는 전단지와 어지럽게 널려 있고,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귀 위에 펜을 꽂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느라 삼삼오오 모여 있는 모습에서 마치 경매장 같은 분위기가 났다. 법원의 권위나 경매절차의 엄정함이 느껴지기 보다는 시끌벅적한 저자거리의 모습이 연상되었다. 그런 한편으로는 채무초과자, 사업실패자, 이혼부부 등의 생명력을 잃은 재산이 이 곳 법정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 새생명을 얻는다는 점에서는 엄숙함보다는 이와 같은 활기가 더 어울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특이한 입찰자도 있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빌라주택 사이의 약 300평방미터의 토지 세 건의 각 148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와 있었다. 지목은 대지이지만 물건 사진을 보니, 빌라거주자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쓰이고 있는 땅으로 보였다. 공유자가 78명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자산가치는 높지 않아 보였다. 최저경매가는 물건당 65만원선으로 다른 물건들에 비해 아주 싼 편이었지만, 어차피 ‘비지떡’이어서 과연 입찰자가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그런데 각 물건마다 2명씩 경쟁입찰이 벌어져 그 중 1인에게 낙찰되는 모습에 놀랐다. 왜 사는지 하도 궁금해서 그가 경매법정을 빠져나가는 것을 뒤쫓아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런데 답변은 “재미로 한번...”. 조금 허탈했지만 인상 깊은 체험이었다.

담임지도관께서 재판관을 여는 날엔 형사 법정을 방청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공판 때는 재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 검사와 변호인의 각종 행위 하나 하나가 소송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로스쿨에서 배운 내용에 대입시켜 보려고 힘썼다. 너무 과도하게 정신을 집중해서 그런지 머리가 조금 아파왔다. 내용상으로도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았다. 법정은 인간 군상들의 갖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소인 것 같다. 이 지면을 통해 누구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TV에서 본 유명한 영화배우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것도 중앙지법이기에 가능한 경험이었다.

부지도관의 민사 법정은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실내 공간이 참 깔끔했다. 형사 법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대도 낮게 만들어져 당사자들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듯한 인상이었다. 그래서인지 딱딱한 법정의 인상보다는 ‘컨퍼런스룸’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민사 사건에는 재판부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판결에 앞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 분쟁을 조기종결시키는 것도 중요하므로, 그러한 기능을 하기에 법정의 형태가 적합하게 느껴졌다. 사전에 기록을 검토하고 법정을 방청하니 사건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훨씬 재미있었다. 그전까지 개인적으로 민사 법정을 방청하면 재판부와 각 당사자가 기록을 충분히 보고 왔다는 전제 아래서 기일에서는 서로 불분명한 부분만 확인하고 있어서, 기록을 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해 헤매곤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할 기회도 있었는데,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배심원 선정 절차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공판검사와 변호인이 각자 자기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줄 것 같은 배심원을 남기고, 그렇지 않은 배심원은 선정 절차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미국 법정 드라마 속 한 장면을 보는 듯 했다.

4. 국선전담변호인 보조와 법정변론 시연

문계정 변호사님과과의 만남도 인상 깊었다. 문 변호사님은 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인 합동법률사무소 ‘프로보노’ 소속으로서, 우리 조 담임지도관 재판부인 형사5부 사건의 국선 변호를 거의 도맡아 하고 계셨다. 실무수습 필수 과정 중에는 ‘국선번호 보조’도 있었는데, 문 변호사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지도해주셔서 형사번호 실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문 변호사님이 지정해준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고 증인신문사항과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검사 측에서 내세운 증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해서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 사건이었는데, 아주 간단한 사안이었지만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고 변론의 뼈대를 세우는 일이 그리 만만치는 않다고 느꼈다. 사례집에 나오는 정제된 케이스 문체에 비해 실제 사건은 훨씬 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고, 사건 관계자들도 항상 일관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어서, 재판을 보면서 어리둥절해지는 경험도 많이 하게 됐다. 그런데 사법연수생은 형사소송규칙으로 국선변호인 자격이 주어지는 데 반해, 로스쿨 실무수습생은 그렇지 않아서 법정에서의 변론은 해볼 수는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다.

무엇보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아마도 우리가 실제 재판부를 상대로 실제 법정에서 변론을 실습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인접 재판부에 배정된 실무수습생조가 검사측을 맡고 우리 조는 변호인측을 맡았다. 양측은 모의 기록을 가지고 서면을 한 차례 주고 받은 뒤, 하루 날을 잡아 법정에서 변론 실습을 했다. 변론요지서 자체는 만족스럽게 쓰여진 것 같았는데, 실제 법정에서 서서 그것을 진술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조원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한 덕분인지 중앙지법에서 형사분야 우수 변론팀에 선정됐다. 실무수습 마지막날 사법연수원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뽑힌 또 다른 우수팀과 짝을 이뤄 변론을 시연하는 영광도 가졌다.

V. 첫 마음을 되새기며

지금까지 중앙지법에서의 실무수습 경험을 정리해봤다. 기억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하고자 노력했는데,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입학 후에 펼쳐질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그려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미진한 부분은 <고시계> 2011년 10월호에 실린 지준연 원생님의 중앙지법 실무수습기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실무수습의 세부 과정을 시간순으로 꼼꼼하게 정리한 글이다.